

1. 개정이유

위험물운송적합증 신청을 선박검사대행기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공통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검사신청 서식(안 제24조의6 신설)

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·운송·저장 방법에 대한 검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

나. 전자증서의 발급(안 제24조의7 신설)

위험물운송적합증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국무조정실과 협의 예정

해양수산부령 제 호

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

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6 및 제2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6(검사신청 서식)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·운송·저장 방법에 대한 검사를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의3제1항, 제2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24조의7(전자증서의 발급)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4조의6(검사신청 서식)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·운송·저장 방법에 대한 검사를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의3제1항, 제2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.
<신 설>	제24조의7(전자증서의 발급)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 적합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.